

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64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3월 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재난발생 시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2. 주요내용

- 재난발생 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(안 제5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생략)

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재난 피해 지원) ①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5조의2(재난 피해 지원) ①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